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관리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	두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	지국코드
내·외국인	내 :	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	덕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속 피견근로	자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	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	내주1, 세대원2
어마셔서 그리	게소	그리4 조트티시아

								연말정산		[주1, 세내원2 [로1, 중도퇴사2		
		① 법인명(상	호)			(2) 대	표 자(성 등	 명)	'			
징	수	③ 사업자등록					 민 등 록 번 :					
의	무자	③-1 사업자단·		· 여부 (여1 / 부2							
		⑤ 소 재 지(주										
人	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r	8 주	소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6−1 ¦	날세조합	합 계		
	9 ⊒	무 처 명										
	⑩ 人	업자등록번호										
_	⑪ 근	무기간		~	~		~		~	~		
근 무	⑫ 감	·면기간		~	~		~		~	~		
· 처	13 급	여										
별	⑭ 상	여										
소 득	15) 인	정 상 여										
득 명	15-1 -	주식매수선택권 행	의									
세	15-2 -	우리사주조합인출	급									
	15→3 2	원 퇴직소득금액 한당	조기액									
	15-4 2	직무발명보상금										
	⑯ 계											
	⑱ 국	외근로	MOX									
Ш	<u>1</u> 8-1	야간근로수당	00X									
비 과	18-2	출산 • 보육수당	QOX									
세	18-4	연구보조비	HOX									
및	1 8−5											
감 면	18-6											
		~										
소 득	18-37											
명		련보조수당	Y22									
세		과세소득 계										
	20-1	감면소득 계				<u> </u>				\ Lal=EH:"		
	<i>€</i> 0 7-	구	분		(8)	소 =	두 세	⑦ 지방소득/	41 80) 농어촌특별세		
Ш	⑰ 결		액									
	-1. I H	③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F								
액	기납부 세 액	- (결정제핵단의 세액을 적습니다										
끅 명	"	① 주(현)근무										
세	⑦ L	<u> (5 1 (년 / 년 1 </u> 부특례세액	ı									
~II		<u> </u>	<u>액 (⑦</u>)-	-(73)-(74)-(75)								
		<u> </u>			 구)한니다							

징수(보고)의무자

세 무 서 장 귀하

(8쪽 중 제2쪽)

															<u>(8쪽 중 제2쪽</u>
	21)	총급(여(⑯, 9	기국인단일	세율 적용시	연간 근	 로소득)		48	종합	├소 ⁼	두 과세표	 E준		
							<u> </u>		49						
	② 총급여(⑯,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 연간 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공제 ③ 근로소득금액										세인	-			
	(3)				5.1					50	「소	득세법_			
		김보	_	<u> </u>						세특례제	한법」(愈 제				
	기 <mark>생 본 인</mark>								액	(52)		 세특례제			
		제	26 부	· 양 가	족(명	!)			감				안답」 세3	00호	
		초	② 경	로 우	대(명)			면	53	조세				
		추 영 보 구 네('8) 가 공 이 이 인(명) 공 이 부 녀 자							-	· ⑤ 세 액 감 면 계					
		공	② 부	- 년 ⁷	자					(55)	그ㄹ	소득			
		제		· 부 모						- 00			7 THEH ALTH	J / Ed.)	
								(56)	자녀		공제대상자				
		③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		1		출산・입잉		출산 • 입양	자 (명)	
						대상금액				(57)	「과학기술	인공제회법」	공제대상금액		
		Оď		⑦ 공무원	년연금	-	공제금액				ଐ	따른 퇴	직연금	세액공제액	
		연 금					대상금액		-	연				고레디사니그애	
		모				-	네싱급백		-	금		「근로자퇴 서. 에. 따르			
		오 ③				고제그애				HO " 10 ' 1 ' 1 C C		- A-10-0	세액공제액		
		도 ③ () 군인연금 점 공 적 료 연 금 공 보험료 제 공 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ONIDI			계 	(50)	연금저축	_	공제대상금액	
									1	좌	<i>W</i>	ᆫᄆᄭᆿ	1	세액공제액	
											(59)-	-1 ISA 민	기시 연금계좌	공제대상금액	
							공제금액					납입액		세액공제액	
	종합			- IH-16	>-!! = -! =		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소득 환 별정우체국연금					-	공제금액		1				보장성	세액공제액	
ıv	공제	공제			017171	대상금액		1		60	보험료				
IV	011	요양보험료포함)		드인상기 화)			-				장애인전용	공제대상금액			
			③ 보험료	ш.о		= /	공제금액		-				보장성	세액공제액	
정			(l) 고용!	보험료		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⑦ 주택임차차입금 대출 ²		공제금액				61)	의료비						
산				⑦ 주택 9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									세액공제액	
_		_		원리금상	환액	거주자			세					공제대상금액	
пн		특			4514 DIOL				⑥ 교육비			세액공제액			
명		별			2011년 이전	15년~29년			액			1			
		소			차입분	30년 이성			공	ᇀᇤ				공제대상금액	
세		득	(34)	4	2012년 이후		9 의 이거나,		제	특별		⑦ 정치		세액공제액	
		공	주택 자금	장기주택	2012년 이후 차입분	비거치	사한 대출			세액		자금			
		제		저당 차입금	(15년 이상)		·의 대출			공제		기부금	10만원	공제대상금액	
				│ 이자 │		고	정금리이면서 서치상환 대출						초과	세액공제액	
				상환액	04년 4 이후	15년 및	1시성환 대출 성금리 이거나, 서치상환 대출		1		63	(l) 「소	 듣세번 .		
					2015년 이후 차입분	아당 비기	시치상환 대출				7.	제 34조	제2항제1호	공제대상금액	
					INC	그 두	밖의 대출 성금리 이거나,		-		기 부	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	
						~15년 비7	러니 에기다, 네치상환 대출				부금	마 우	리사주조합	공제대상금액	
			35 7	부금(이	월분)							기부	금	세액공제액	
	(37) ·	えト フ	③6 계 난 수 5	 특 금 액					-			관	두세법 ₁ 제34조	공제대상금액	
		(38)	개인연	[금저축								제3항제1	호의 기부금	세액공제액	
		39	소기업	・소상	공인 공제	세부금						(종교단		공제대상금액	
					양저축							마 소득/	배」제34조 흥의 기보그	11011 그 11011	
		<u>40</u>	주태□	l려(4) 주	택청약종	합저축						세3양세1	호의 기부금 단체)	세액공제액	
		⑩ 주택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저축소득공제				· · ·			1		64)	계 계	/		
		(B)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표준세'	애고제		
	그밖 의	<u> </u>			_				-						
	소득			합출자						66	납세	조합공기	1		
	공제	42	신용키	ト드등 ㅅ	ト용 액					67)	주택	차입금			
		43	우리시	구조합	출연금					68	외국	납부			
	④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1					공제대상금액		
						- 1			1	69	월세	액		세액공제액	
				의 소득					1	(70)	세	액 공 7	 레 계	1 10 11 1	
							(71))		<u> </u>					
	47)	소득	공제 중	종합한도	초과액				81))/②)×100		
									[(01)	2 7	- 기 근	2 (10) (((y/ ⟨y/ ∧ 100		

				-							애인 해	당 시	해당 :	코드 기재)를	하며	, 각	종 소	득공	제・세액
공저	∥ 항복	은 공제를			실제 기	지줄한	난 금액을	선 석습	하니다	.]	71		. TI 1	IIOU 고ᅰ 호L모					
고나게		인적공	제 양 . 기		경로	출산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 명	공		우대	입양	자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 · 외	주미	등록번호	부녀	한부	장 애	자녀	구분	건강	고요	보장성	장애인 전용	일반	난임	65세이상 • 장(실손		일반	장애인
국인	1 12 6	0157	자	모	인	7,151		L: 0		T-0-0	보장성	2		건강보험산정특	례자	보험	금		특수교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 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 계															
아는 '	인원구들	적급니다.					기타 계												
0	(ユ2	자 본인)	() T			국세청 기타												
	(근노	사 논인)					기나 국세청												
		_		1			기타												
							국세청												
		-					기타												
								각:	종 소득		세액공제		-11						
										신용2	카드등 사	용액공/	4I						
	l료 I				. –	-TI-	1-1	청그여스즈			등사용분	T. E	EL O. H			소비증	가분		기부금
	분			신용키	<u> </u>	식물				7천만원 만 기재)	신중시경사공군		대중교통 이용분	2020 전체시		2021 전체사			
국세	청 계																		
기티	· 계																		
국/	네청																		
フ	타																		
국/	네청																		
フ	타																		

작성 방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 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KR, 미국: US
-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 3.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 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I.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⑩ 비과세소득 계"란 및 "⑩-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II.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6.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⑩-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 을 "⑪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 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7. "⑩ 총급여"란에는 "⑯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⑯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8.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③~⑤)"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③~⑥)"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9. "연금계좌(⑰~똀~1)"란과 "특별세액공제(⑯~⑯)"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작성 방법

- 10. ②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③ 주택자금공제(②+④),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④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②+④+®), ④ 투자 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 ②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 11. ⑱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శ 차감소득금액에서 ⑯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ச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12. ⑤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13.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 1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⑧실효세율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만으로 표시하고 그 외는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15. "⑦ 소득ㆍ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 ① 3 마)	8

-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나. 내 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 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 바.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 사. 의료비(일반, 난임,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 16.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18. ③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19. ⑰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 20.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21.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합니다)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도서·공연등 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2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소득세법 § 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 § 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X
	소득세법 § 12 3 마	E01		고용보험법	X
	A E 11111 8 40 0 111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X
	소득세법 § 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X
	소득세법 § 12 3 사 소득세법 § 12 3 아	F01 G01	(18)-5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 11)	×
	그득세립 8 15 2 이	H01	18-9	마라에 되자 _{미(} 포득항왕 II) 소득령\$12 1(법령·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0
		H02	40-9	소득령 § 12 2 ~ 3(일직료·숙직료 등)	×
		H03		소득령 § 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 § 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18	소득령 § 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0
		H06	18-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0
		H07	18-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0
		H08	18-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0
		H09	18-4	소득령 § 12 12 나(연구보조비 등)	0
	소득세법 § 12 3 자	H10	(18-4	소득령 § 12 12 다(연구보조비 등)	0
		H14	(18)-22	소득령 § 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0
		H15	(18)-23	소득령 § 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0
		H11	18-6	소득령 § 12 14 (취재수당)	0
		H12	18-7	소득령 § 12 15 (벽지수당)	0
		H13	(18)-8	소득령 § 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0
		H16	(18)-24	소득령 § 12 17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0
비과세		소득령 §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0		
	소득세법 § 12 3 차	1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0
	소득세법 § 12 3 카	J01	9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 § 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 § 12 3 파	K01	(18)-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0
	소득세법 § 12 3 하	L01	_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M01	(18)	소득령 §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0
	소득세법 § 12 3 거	M02	18	소득령 §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0
		M03	18	소득령 § 16①2(국외근로)	0
	소득세법 § 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 § 12 3 더	001	18-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0
	소득세법 § 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고득세합 8 12 3 더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 § 12 3 머	Q01	18-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0
	소득세법 § 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 § 12 3 서	R10	18-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0
	소득세법 § 12 3 어	R11	18-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0
		V01		사택 제공 이익	×
	소득세법 § 12 3 저	V02		주택 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	×
		V03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	×
		V04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X
	구 조특법 § 15	S01	18-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0
	조특법 § 16의2	U01	18-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0
		Y02	(18-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0
	조특법 § 88의4⑥	Y03	18-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0
	V E 111H 6 10 0 41	Y04	18-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0
	소득세법 § 12 3 자	Y22	19	소득령 § 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0
	조특법 § 18	T01	(18)-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0
	T E HI \$ 40	T02	18-3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70%)	0
	조특법 § 19	T30	18-3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0
	조특법 § 29조의6	T40	18-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0
감면	조특법 § 18조의3	T41 T50	(18-37 (18-35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0
	구그티 2 10구의 3	T11	18-3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50%)	0
	조특법 § 30	T12	18-2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0
	十一日 3つ0	T13	18-3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0
	조세조약	T20	18-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교수)	0
		120	10 20	+ 10 + 10 Lim(#11 #1/	

	9	연금·저	축 등 소득・	세액 공제명세서	(04 8 1104)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4 이러비송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1. 인적사항	⑤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⑥ 사업장 :	소재지		(전화번호	<u>\$</u> :					
2. 연금계좌 서										
1) 퇴직연금계	좌									
* 퇴직연금계3	와에 대한 명	세를 작성합	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호	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	좌									
* 연금저축계3	와에 대한 명	세를 작성합	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호	l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3)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남	날입액								
 * 납입 연금저	축계좌·퇴격	^딕 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	l다.						
연금 구분	금융호	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3. 주택미련저	<u></u> 추 소드고제									
			를 작성합니다.							
-	<u>' </u>		계좌번호	1-1-01-7-01	ᆺᆮ고ᆀᄀᅄ					
저축 구분	급용외	가 ㅎ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	 지증권저축	소 득공 제								
			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ŀ .						
	· 융회사 등	_ 10 11 1 -1	계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장외사 등		(또는 증권번호)	HH=4	고득등세급력					
5 중소기언 최	하언투자조하	· 축자 등에 대	 과하 소 드고 제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 득공 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 득공 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구분 금			당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작성 방법

-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4.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겨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전환금액의 10%,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제 4호 ·제 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 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 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7.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여, []부]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4 이디니는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1. 인적사항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① 임대인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9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⑩ 계약서 상임대차 계약기간개시일 종료일						⑪ 연간 월세액(원)	(4) 세액공제금액(원)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5) 대주(貸主)	⑥ 주민등록번호	즈미드로버호 (⑦ 금전소비대차		원	리금 상환역	② 공제금액	
切 切下(其土)	⑩ 누런등득단포	계약기간	이자율	① 계	20 원금	②1)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② 임대인 성 명 (상 호)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②5 유형		②6 계약 면적(㎡)	② 임대차계약서 상	②》 계약 임대차 기	② 전세보증금	
(상호)	(사업사면오)	<u>-</u> (원) 유영 면적(주소지	개시일	종료일	(원)
-							

※ ⑤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작성 방법

-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 해야 한니다
-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 •원리금상환액과 소득 •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3. ⑨, ⑤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4. ②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관리	
버ㅎ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冷保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장 +						국식	국식고드	
응 구	지 스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성 명)	
1		③ 사어지드로버 5				④ 주 민 등 록 번 호		
*************************************	의	쿠사 │	5 소 재 지 ((주소)		'		
용 수	e M B			명		⑦ 주 민 등 특	루 번 호	
이 근 무 처 명 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u>-</u> -^r	8 주	소				
1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1		⑨ 근	무 처 명					
금		⑩ 사업자등록번호						
전		⑪ 근무기간			~	~	~	
전	ㅁ	⑫ 감면기간			~	~	~	
변 용 상 여	처	13 급	여					
소등명성 ® 인정상여 등이 구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등이 구식매수전택권행사이익 (%) 2 우리사주조합인★금 등이 경원퇴자소득금액한★과막 등이 경원되자소득과막 등이 경원되자소득과막 등이 경원되자소득과막 등이 경원되자소득과막 등이 경원되자소득과막 등이 경원되자소득과막 무실보조수당 보건 보건 <td rowspan="3">별 소 득</td> <td>14 상</td> <td>여</td> <td></td> <td></td> <td></td> <td></td>	별 소 득	14 상	여					
명		15 인	정 상 여					
M 10 - 2 우리사주조합인 출 금		15-1 주	식매수선택권 행/	나이익				
응3 임원 퇴자소독금액 한도초액 (등-4 (무용) (무용) (무용) (무용) (무용) (무용) (무용) (무용)		①5-2 우	리사주조합인출	출금				
등 계 비비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 *11	ⓑ-3 임원	!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고맥				
II III III <th></th> <td>15-4</td> <td></td> <td></td> <td></td> <td></td> <td></td>		15-4						
B-1 야간근로수당 OOX B-2 출산・보육수당 QOX B-4 연구보조비 HOX B-5 B-6 B-6 B-37 B-37 B-7		16	계					
비과서 ®-2 출산・보육수당 QOX 18-4 연구보조비 HOX 18-5 18-6 18-6 18-37 19 수련보조수당 Y22 10 수련보조수당 Y22 10 비과세소득 계 18-37		⑱ 국외	근로	MOX				
과 세	Ш	18−1 0	·간근로수당	00X				
M 18-4 연구모소비 HOX 18-5 18-5 18-6 18-6 18-37 18-3		18-2 출	산•보육수당	QOX				
및 ®-5		18-4 연	구보조비	НОХ				
감 ®-6 면 ~ 소득 ®-37 ® 수련보조수당 Y22 세 ② 비과세소득 계		1 8−5						
면 ~		18-6						
명 19 수련모소수당 Y22 세 ② 비과세소득 계	면		~					
명 19 수련모소수당 Y22 세 ② 비과세소득 계	소	18-37						
M ② 비과세소득 계	명	① 수련	보조수당	Y22				
⋒-1 강면소득 계		@ 비고	H세소득 계					
♥ ' u = - ' ' '		∞-1 김	l면소득 계					
② 근로소득 차 감 납 부 세 액		② 근로	소득			차 감 닡	부 세 액	
		22			∅ 소 득 세			
^1 │ ②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 │ │ │ │ │ │ │ │ │ │ │ │ │ │ │ │ │ │	세 액 계 산	⊕ L-1 1 1 1 1 1 1 1 1 1 1						
│ │ 세액		세액 24 외국납부		<u>i</u>		 		
계 _{공제}			② 납세조합	10/1001		₩ ·10 ┴ ¬ ′11		
산 (10) (3) (4) (7) (10) (10) (10) (10) (10) (10) (10) (10		@ LI LI		0/100]				
위의 난부 세앤을 영수한니다				여스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 방법

납세조합

- ※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